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2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주철현의원안)	2

I. 개요

1.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2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태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II. 검토의견

1. 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주철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 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제6호)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8년 12월 31일(주철현 의원안)</u>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제(제106조 제2항) ☐ 면제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제9호)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8년 12월 31일(엄태영·주철현 의원안)</u>

* 엄태영의원안 2025. 1. 15. 발의(의안번호 7527),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제도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개정안은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농어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임.

□ 현재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어민이 공급받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동 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른 2024년 감면세액은 2조 2,408억원임.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4년 감면 세액은 29억원으로 전망됨.

[농어업용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의 조세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전망)	2025(전망)
영 세 율	17,763	18,481	21,886	23,047	22,408	23,586
수입면세	21	34	46	24	29	31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1)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임업용·어업용·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함.

있음.

첫째, 농·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므로,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7	60,031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2
2019년	41,182	61.8	48,415	72.6	66,660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3
2021년	47,759	65.7	52,392	72.1	72,688
2022년	46,153	63.6	52,911	72.9	72,548
2023년	50,828	67.5	54,779	72.7	75,348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²⁾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민이 기자재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 통계청의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수는 2007년 123만호에서 2020년 103만호로 15.8% 감소하였고, 어가 수는 2007년 7만 4,000호에서 2020년 4만 3,000호로 4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10억원 이하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및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66조·제67조·제68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³⁾

[농업인등에 대한 조세정책]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 10억원 이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69조	·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3)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개략적으로 32개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타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나 기자재 사용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비료와 사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문제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농어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반면, 소규모·영세 농어민은 기자재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아 대규모 농어민과 소규모 농어민 간의 세제 혜택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특례는 원칙적으로 일몰 전에 제도의 효과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농어업용기자재 영세율의 2025년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타당성·개선방안 등을 평가하여 조세특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제도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